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「항만법」을 일부개정(법률 제 17620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함에 따라, 국내복귀기업 범위, 우선입주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(제70조 제4항 신설)

-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 국내기업의 입주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정함

나.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(안 제71조제1항) 및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(안 제71조제2항)

-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인 수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,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2. ~ 3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80”을 “50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입주자격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70조(입주자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u>
<u>④ ~ ⑩</u> (생 략)	<u>⑤ ~ ⑪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
제71조(우선입주) 법 제70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”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<u>80</u> 이상인 자를 말한다. <u><신 설></u>	제71조(우선입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0 -----. <u>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를 말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755